



: 2020-08-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052733(본소) 용역비
2019가단5120940(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배정원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7.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9,8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9,723,500원 및 그 중 29,881,500원에 대해서는 2018. 4. 1.부터, 39,842,000원에 대해서는 2018. 5. 9.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웹 페이지 개발 협의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및 웹 페이지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판매,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업'을 위해 암호화폐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D(반응형 웹, 이하 '이 사건 웹 페이지'라 한다)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원고에게 위 개발용역을 맡기기로 하였다.

○ 이에 피고 측 담당자(이하 피고 측 담당자도 '피고'라고만 한다)와 2018. 3. 12. 원고 측 담당자(이하 원고 측 담당자도 '원고'라고만 한다)가 개발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록(갑제3호증)은 별지와 같다.

· 위 회의록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개발 범위에 포함



된 '랭킹' 부분은 24시간 기준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시간 데이터 반영'은 2차 개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위 회의록을 송부하면서 2차 개발 관련 문서를 조만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갑제3호증),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8. 3. 14. '2차 고도화 개발 로드맵'(갑제4호증)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 여기에는 'ICO 참여가 가능한 월렛(이하 'ICO 월렛'이라 한다) 개발, 실시간 정보 표출을 위한 페이지 개선, 200개 거래소 데이터 연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에 피고는 '1차 개발에서 ICO 월렛을 개발하는 것 아니었는지' 문의하자, 원고는 'ICO 투자연계 기능개발은 1차 개발에 포함되어 있지만 ICO 전용 월렛 개발은 2차 고도화 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을 뿐(갑제5호증), 데이터 실시간 표출을 위한 페이지 개선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 원고와 피고는 개발협의를 거쳐 2018. 4. 10.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상세 개발 기획서'에는 대략의 홈페이지 형식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 웹사이트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E'와 'F'를 메인 벤치마킹 사이트로, 'G'와 'H'를 디자인 참조 사이트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방법



- 총액 99,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별도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 선금(30%) : 29,881,500원, 2018. 4. 9. 현금 지급
- 중도금(40%) : 39,842,000원, 2018. 5. 9. 현금 지급
- 잔금(30%) : 29,881,500원, 검수 완료 후 3일 내 현금 지급

○ 계약기간 : 2018. 3. 30. ~ 2018. 6. 25.

○ 개발사항

- 코인 정보제공 커뮤니티 사이트 반응형 웹 1종 구축
- 반응형 모바일 구축(I)
- 관련 상세 개발 기획서(첨부 2)의 내용에 준함
- 결과물은 관련한 개발소스, 기획 스토리보드, 실행파일, 디자인 PSD 파일, html 포함

○ 계약 일반조건

제3조 (용역의 범위)

반응형 웹 개발을 수행할 범위는 위 개발사항에 명시한 내용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검수 및 완료)

1. 원고는 개발수행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원고가 검수를 요청한 날부터 협의한 기간(검수기간) 내에 원고에게 성과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수행한 웹사이트 개발은 피고의 검수에 합격한 때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추가 비용)

1.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작업을 도급(추가 도급)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대금(추가 대금) 지급이 필요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대금이 합의되는 경우, 추가도급 및 추가대금에 대해서 본 계약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를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피고의 시정 요구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2) 원고 또는 피고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 3) 원고 또는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2. 피고의 협정 위반에 대한 원고의 시정 요구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해지 효력은 피고 또는 원고가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4.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 경과

○ 이에 따라 원고는 JAVA 언어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 개발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2018. 4. 11. 선금 29,881,500원, 2018. 5. 9. 중도금 39,842,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업무 분장 및 상세일정'(을제3호증)을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COIN, ICO, 랭킹, 로그인, 뉴스, 포트폴리오, 마이페이지, 메인 화면을 포함한 웹페이지는 2018. 6. 22.까지 오픈하고, Forum은 2018. 7. 6.까지, Event는 2018. 7. 20.까지 개발 완료하여 최종 검수를 2018. 7. 27. 받겠다.'는 것으로, 당초 용역기간을 2018. 6. 25.에서 2018. 7. 28.까지 연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을제3호증). 피고는 이에 동의해 주었다.

○ 피고는 2018. 5. 26.경 원고가 개발 중인 웹 페이지 상 암호화폐 시세 정보가 24시간마다 한 번 씩 표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5. 27. 원고에 '벤치마킹하기로 한 J 등은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시세 정보가 반영되는데, 이 사건 반응형 웹이 24시간마다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면 누가 우리 웹을 이용하겠느냐?'는 등으



로 문의하였다(을제4호증).

○ 이에 원고는, '이미 24시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반영하다고 하였고, 3월초 협의 단계에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은 2차 개발 때 적용한다고 하였다. 랭킹, 포트폴리오 등은 24시간 기준인데 코인 시세만 실시간이면 계산 자체가 힘들다. 개발 중인 시스템 상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없고, 실시간으로 가려면 개발언어를 JAVA가 아닌 파이썬, 노드제이에스로 다시 개발하여야 한다. 실시간으로 가면 개발언어를 변경해야 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은 다 필요가 없고 모든 페이지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갑제6호증, 을제13호증).

라. 2018. 6. 6.자 대면회의¹⁾ 및 이후 경과

○ 이에 따라 2018. 6. 6. 대면 회의가 열렸다. 위 회의에서 피고는 각종 수정사항과 추가 개발사항을 요청함과 아울러, 원·피고는, 개발언어를 파이썬, 노드제이에스로 변경하고, 코인 시세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며, 랭킹 내 정보현황, 포트폴리오는 24시간 갱신키로 하며, K 거래소 외에 나머지 2개 거래소(L 및 M)도 적용하기로 하고, ICO 월렛 개발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위 회의록에는 용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갑제7호증).

○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을 위하여 N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었다(갑제8호증).

○ 원고와 피고는 2018. 6. 23.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18. 6. 22.까지 오픈하기로 한 'COIN, ICO, 랭킹, 로그인, 뉴스, 포트폴리오, 마이페이지, 메인 화면을 포함한 웹페이지' 중에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을 제외한 원고의 개발사항을 검토하였고(피

1) 갑제7호증 회의록에는 회의일시가 2018. 6.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텔레그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2018. 6. 6.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20-08-11

고의 반소장 8페이지), 피고는 이에 관한 추가 수정 및 요구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갑제15호증의 4, 을제5호증).

○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메인 디자인과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을 보내면서 확인 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갑제9호증의1).

○ 원고와 피고는 2018. 7. 22.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18. 7. 29.까지 오픈하기로 했던 나머지 개발사항을 검토하였고, 피고는 수정사항과 추가 요구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개발 상세일정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coin 분야는 2018. 9. 30.까지, ICO는 2018. 8. 14.까지, ICO 신규 엑셀 DB등록은 2018. 9. 7.까지, 자유게시판, 공지사항은 2018. 8. 17.까지, 포트폴리오는 2018. 10. 22.까지 각각 완료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을제7호증).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포트폴리오 메뉴를 2018. 10. 31. 오픈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여기에 동의하였다.

○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일부 메뉴를 오픈하였고, 메인 화면과 이벤트 화면 디자인을 보내니 확인해 주면 이 부분도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갑제9호증의1).

○ 원고는 2018. 10. 31. 피고에게 '포트폴리오 메뉴를 오픈하였다. 현재 K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포트폴리오에 적용하였다. 나머지 2개 거래소의 데이터 연동과 메인, 이벤트, 랭킹 등은 추후 일정을 잡아서 공지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다(갑제9호증의2).

○ 피고는 오픈된 포트폴리오 기능을 1주일 간 테스트해 보았고(반소장 10페이지),



2018. 11. 5. 원고에게 'K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인증절차를 거치고 K 및 ICO 지갑을 등록하였는데 데이터가 표출되지 않고, 페이지 상 투자금 합이 맞지 않으며, K API를 연동해서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라 오른쪽에 K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K에서 주는 API 필드명이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을 체크해 보고 의견을 주겠다.'고 회신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N 서버를 제공받아 웹 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비용을 미납하여 2018. 11. 17. 서버 이용이 중단되었다.

○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K 데이터를 새로 변경된 API 최종본에 맞춰서 업로드 하였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가 비용을 미납하여 서버가 정지되어 개발진행이 안 되고 있다. N 측과 연락하여 조속히 서버를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갑제9호증의4).

○ 피고는 2018. 11. 29. N에 비용을 납부하여 그 이후 서버가 연결되었다.

○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2018. 10. 31. 이메일로 나머지 2개 거래소 데이터 연동 부분과 메인, 이벤트, 랭킹 등 일정을 잡아 공유한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11~12월은 어떤 부분을 개발하였는지 알려 달라.'고 메일을 보냈다(을제9호증).

○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05경 피고에게 'L 거래소 관련 개발이 70% 진행된 상황이다. 피고가 메인과 이벤트 메뉴 디자인을 확정해 주지 않아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수정사항이 없다면 제안했던 디자인대로 개발을 진행하겠다. 나머지 M 거래소와 메인, 이벤트, 랭킹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데드라인 일정을 잡아서 공유하겠다.'고 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19:30경에는 피고에게 '메인 화면과 이벤트 페이지 관련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html 작업과 개발 진행하도록 하겠다. 2019. 1. 15.까지 메인과 이벤트 화면 개발 완료, 랭킹 쪽은 포트폴리오와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L, M 거래소 완료가 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

○ 원고는 2018. 12. 25. 피고에게 'L와 M 거래소는 2019. 2. 22.까지 개발일정을 완료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다.

○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메인, 이벤트, 뉴스 메뉴를 오픈하였다.'는 메일을 보냈다.

마. 피고의 용역계약 해지 통보 및 이후 경과

○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당초 용역개발기간은 2018. 3. 30.부터 2018. 6. 25.까지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니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을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갑제11호증).

○ 피고는 2019. 1. 21. N에 서버 해지 요청을 하였고(갑제12호증의1), 2019. 1. 29. 원고가 그 때까지 개발한 용역 성과물이 삭제되었다(갑제12호증의3)

○ 피고는 2019. 2. 22.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니 원고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부와 용역성과물을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갑제1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 14, 15호증, 을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물인 코인 데이터가 실시간 기준으로 표시되는 웹 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대금 잔금 29,881,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개발 수행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원고가 수행한 웹 페이지 개발은 피고의 검수에 합격한 때 완료한 것으로 보며, 피고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3일 내에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대로 3곳 거래소의 코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웹 페이지를 2019. 2. 22. 개발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9. 1. 15.까지 납품한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검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용역대금의 70%를 지급받은 상태인데 원고가 기납품한 용역 성과물이 이에 미친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

다. 소결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개발될 웹 페이지는 코인 시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원고는 2018. 6. 25.까지 웹 페이지 제작을 마쳐야 한다.

○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시세가 24시간마다 한 번씩 반영되는 웹 페



이지를 제작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양해 하에,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2018. 12. 31.까지 실시간 시세를 반영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웹 페이지 개발에 실패하였다.

○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같은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합계 69,723,5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의 해석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피고의 시정 요구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10조 제4항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그 때까지 제작된 일체의 용역 결과물까지 피고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 즉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 대해서도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 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



례가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때까지 성과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개발 완성도와 무관하게 '피고의 시정 요구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때까지 진행한 용역 성과물까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용역계약 당시 '실시간 시세를 반영한 웹 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는지

○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그 첨부문서 어디에도 장차 개발할 웹 페이지의 코인 시세가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상세 개발 기획서'에서 벤치마킹하기로 열거된 사이트들이 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 사건 웹 페이지의 목적이 암호화폐 시세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실시간 시세가 반영되는 웹 페이지'가 개발 대상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전인 2018. 3. 12.자 회의록(별지)에는 '실시간 데이터 반영'이 2차 개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8. 3. 14. '2차 고도화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피고에 송부하였는데, 위 로드맵에도 '실시간 정보 표출을 위한 페이지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피고는 'ICO 월렛'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 실시간 시세 정보를 구현할 수 없는 JAVA 언어로 개발 작업에 착수한 점 등을 종합해



: 2020-08-11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발 대상물을 '실시간 시세 정보를 반영하는 웹 페이지'로 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8. 5. 26.경까지 JAVA 언어로 24시간마다 시세 정보가 반영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한 것을 두고 원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원·피고가 2018. 6. 6.자 대면 회의를 통해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때 비로소 이 사건 용역 대상물에 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당초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작업을 추가 도급하는 경우 원고는 별도의 대금 지급이 필요함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2018. 6. 6.자 대면 회의에서의 합의는 추가 도급의 합의가 아니라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였는지

○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최종적으로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2018. 6. 6.자 대면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용역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회의록에는 용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후 원·피고가 2018. 10. 31.까지 실시간 시세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메뉴를 오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K거래소 데이터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메뉴만 2018. 10. 31.까지 오픈하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L, M 거래소 시세 반영과 이에 연동되는 메뉴는 추후 개발 일정을 공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같은 날 피고에게 발송한



같은 취지의 이메일(갑제9호증의2)을 증거로 제출한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8. 10. 31.까지 위 3곳 거래소의 시세를 모두 반영하는 포트폴리오 메뉴를 오픈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 주장을 전제로, 원·피고 사이에 2018. 12. 31.까지 3곳 거래소의 시세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메뉴를 포함한 용역개발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사이의 회의록이나 이메일, 텔레그램 내용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2019. 1. 16.자 해지 통고와 2019. 2. 22.자 해지 통고도, 원고가 당초 용역기간인 2018. 6. 25.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탓하고 있을 뿐 2018. 12. 31.까지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최종 개발기한인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시정 요구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원고의 귀책사유 존부

○ 앞서 채택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개발 회의에서 각종 수정사항과 추가사항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증거로 제출된 텔레그램이나 이메일 상으로는 피고가 어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어떤 시정 요구를 받고 어떻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나아가 원고가 당초 용역기간인 2018. 6. 25.로부터 피고가 최초 해지 통고를 한 2019. 1. 16.까지 약 7개월여 동안 일을 완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용역기간 중 약 2개월 정도는 '24시간마다 시세 정보가 반영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것인데, 앞서 보았듯 이는 원고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인 점, ② 원고는 2018. 6. 23. 회의 전에 피고에게 'COIN, ICO, 랭킹, 로그인, 뉴스, 포트폴리오, 마이페이지, 메인 화면을 포함한 웹페이지' 중에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을 제외한 개발사항을 제출하였고, 2018. 7. 22. 회의 전에 '2018. 7. 29.까지 오픈하기로 했던 나머지 개발사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에서, 원고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2018. 10. 31. K 거래소 데이터와 연동되는 포트폴리오 메뉴를 오픈하였고, 2019. 1. 11. 메인, 이벤트, 뉴스 메뉴를 오픈하기도 하는 등 계속 용역을 수행하였던 점, ③ 특히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불분명한 합의로 JAVA 언어로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수행하였던 용역을 무위로 돌리고 새로운 언어로 다시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은 앞서 보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은 탓에, 당초 정해진 용역대금으로 변경된 부분까지 전부 수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했어야 하는 점, ④ '실시간 시세 정보를 반영한 웹 페이지'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18. 6. 25.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메인 디자인과 이벤트 디자인 시안을 보내며 확정(컨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1.까지도 확정해 주지 않았는데(피고의 2020. 3. 20.자 준비서면), 이런 사실도 개발이 지연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피고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8. 11. 17.부터 상당 기간 서버가 정지된 것도 개발 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만의 잘못 내지 귀책사유로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 용역이 지



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피고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웹 페이지 개발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피고의 해지 통고는 부적법하다.

바. 소결

피고의 해지 통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따라 용역대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피고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영민



별지

2018. 3. 12.자 개발회의 회의록

| | |
|---|-----------------|
| 회의 내용 | |
| 1. | 사이트 1차 개발 범위 정의 |
| 1차 개발 범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랭킹 (24시간 기준) - 실전 투자와 가상 —투자로 구분한다. 실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투자에서는 최소3개의 거래소 API 연 동(거래소 분석 후) - [] , [] , ? (우선 3개의 거래소로 연동하는 것으로 한다. 이 중 하나는 고객 사에서 정해진 거래소를 적용하되 아님 개발사에서 선정하는 부분으로 한다. 나머지 추가 적인 부분은 추후 2차 개발에 적용하기로 한다.) - 모의 투자 - ICO 가상 투자 화면에 검색 바 적용(검색 시 관련된 가상 화폐 검색 노출) - 기존 리스트 방식 함께 적용 - 랭킹 데이터로 수익률, 투자금액, 매출(마이 페이지 UI 형태 비검, 성향분석포함) - 칭호를 볼 수 있게 처리한다.(예) ICO 고수 단타 고수, 매너 플레이어 고수 등 동등... - 칭호는 실전투자에만 적용한다. - ICO 가상 투자 만들어 저야한다.(랭킹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COIN 가상 투자 만들어 저야 한다.(랭킹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
| 커뮤니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는 랭킹 가중치 비중을 줄였으면 한다. - 커뮤니티는 가상질 개념이다. - 수익률 베이스로 랭킹 가는 것이다. | |
| 2차 개발 범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데이터 반영 - 전자지갑 개념을 통해서 거래 통계 데이터 랭킹에 적용하는 부분 개발한다. -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문서로써 보여주기로함.) | |